[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20100353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2-07-25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8-28

I T C 영 어

정 보 공 개 서

(주)아이티씨교육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아이티씨교육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1599-0205 F A X : 031-784-8858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사업부 / 1599-0205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27, A동 19층 11호
홈페이지 : http://www.itcenglish.com

목 차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별 지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정보마당'-'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법령 및 제도'-'법령자료'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 가맹사업 ("ITC 영어")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 당사와 ITC 영어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가맹희망자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아이티씨교육	ITC 영어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27, A동 19층 11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2. 3. 20	2012. 4. 5	윤성희	1599-0205	031-784-8858
	법인등록번호	110111-4824002	사업자등록번호	120-87-80731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	윤성희	ITC 영어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27, A동 19층 11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윤성희	1599-0205	031-784-8858
감사	김경숙	ITC 영어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27, A동 19층 11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윤성희	1599-0205	031-784-8858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 가 설 명
명 칭	ITC 영어	"ITC"는 Intellectual Thinking & Communication의 약자로써, 언어교육과 언어활용 교육이라는 최고의 교수법을 통해, '지적인 사고 및 분석, 비판과 소통'이 가능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 영어교육 기관입니다.
상 호	ITC 영어 OO지점	
상표(서비스표)	ITC 영어	상표 출원번호 : 40-2024-0071663
광 고	상 동	
그 밖의 영업표지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년	5,351,582	107,598	5,243,984	2,782,148	957,983	753,171
2022 년	5,486,030	56,252	5,429,778	2,416,490	585,499	385,794
2023 년	6,471,045	697,337	5,773,708	2,728,550	768,091	543,930

나.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GYEONGGI-DO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 업 경 력		
			기 간	직 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윤성희	대표이사	2012.03.20 ~ 현재	(주)아이티씨교육	회사 경영
	김경숙	감사	2012.03.20 ~ 현재	(주)아이티씨교육	회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 원 수 (명)		직 원 수 (명)
	상근	비상근	
2023 년 12 월 31 일	2	-	1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명칭	출원 및 등록 일자	출원 및 등록 번호	소유자	등록 만료일
상표 (서비스표)	ITC 통역스쿨	출원일자 2023.04.20	출원번호 40-2023-0071600	(주)아이티씨교육	
상표 (서비스표)	ITC 영어	출원일자 2024.04.18	출원번호 40-2024-0071663	(주)아이티씨교육	
상표 (서비스표)	ITC 통역대학	출원일자 2024.04.18	출원번호 40-2024-0071667	(주)아이티씨교육	
권리 범위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범위 이내 사용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Ⅱ. 가맹본부의 [ITC 영어] 가맹사업 현황

1. [ITC 영어]를 시작한 날 : 2012년 7월

2. [ITC 영어]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아이티씨교육	아이티씨통역스쿨	윤성희	2012 년 7 월 ~ 21 년 10 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42 번길 18, 6 층(권선동)
(주)아이티씨교육	아이티씨통역스쿨	윤성희	2021 년 10 월 ~ 22 년 4 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 1 로 27, A 동 19 층 11 호
(주)아이티씨교육	ITC 영어	윤성희	2022 년 4 월 ~ 현재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 1 로 27, A 동 19 층 11 호

3. [아이티씨영어]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ITC 영어	교육(외국어)	영어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ITC 영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 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 체	35	35	-	66	66	-	80	80	-
서 울	3	3	-	5	5	-	6	6	-
부 산	-	-	-	3	3	-	4	4	-
대 구	-	-	-	-	-	-	1	1	-
인 천	2	2	-	3	3	-	3	3	-
광 주	1	1	-	4	4	-	10	10	-
대 전	3	3	-	3	3	-	3	3	-
울 산	-	-	-	2	2	-	2	2	-
세 종	-	-	-	2	2	-	4	4	-
경 기	25	25	-	36	36	-	32	32	-
강 원	-	-	-	-	-	-	2	2	-
충 북	-	-	-	1	1	-	1	1	-
충 남	-	-	-	1	1	-	1	1	-
전 북	-	-	-	1	1	-	1	1	-
전 남	1	1	-	2	2	-	3	3	-
경 북	-	-	-	2	2	-	4	4	-
경 남	-	-	-	1	1	-	3	3	-
제 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ITC 영어]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35	1	-	1	-	35
2022	35	35	-	4	-	66
2023	66	26	10	2	1	80

6. [ITC 영어]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ITC 영어] 이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의 특수 관계인도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ITC 영어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바로 전 사업연도에 연간평균으로 올린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2023 년 말 가맹점수	2023 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단위:천원)						비고
		연간평균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 (상한)		연간평균매출액 (하한)		
		평균	3.3 ㎡ 당	상한	3.3 ㎡ 당	하한	3.3 ㎡ 당	
전 체	80	67,269	-	370,438	-	8,640	-	영업 6 개월미만 18 개소제외
서 울	6	26,026	-	36,457	-	19,288	-	영업 6 개월미만 3 개소제외
부 산	4	해당 없음	-	-	-	-	-	가맹점 5 곳 미만
대 구	1	-	-	-	-	-	-	가맹점 5 곳 미만
인 천	3	해당 없음	-	-	-	-	-	가맹점 5 곳 미만
광 주	10	86,465	-	217,608	-	28,424	-	영업 6 개월미만 5 개소제외
대 전	3	해당 없음	-	-	-	-	-	가맹점 5 곳 미만
울 산	2	해당 없음	-	-	-	-	-	가맹점 5 곳 미만
세 종	4	해당 없음	-	-	-	-	-	가맹점 5 곳 미만
경 기	32	83,578	-	370,438	-	9,230	-	영업 6 개월미만 2 개소 제외
강 원	2	-	-	-	-	-	-	가맹점 5 곳 미만
충 북	1	해당 없음	-	-	-	-	-	가맹점 5 곳 미만
충 남	1	해당 없음	-	-	-	-	-	가맹점 5 곳 미만
전 북	1	해당 없음	-	-	-	-	-	가맹점 5 곳 미만
전 남	3	해당 없음	-	-	-	-	-	가맹점 5 곳 미만
경 북	4	해당 없음	-	-	-	-	-	가맹점 5 곳 미만
경 남	3	해당 없음	-	-	-	-	-	가맹점 5 곳 미만
제 주	-	-	-	-	-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당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 고지한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당사의 가맹사업은 방문형, 화상형, 학원형, 교습소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기 매출정보는 방문형, 화상형, 학원형, 교습소형을 통합하여 산출한 자료이기에 실제 매출액은 가맹점의 운영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개 지역 내 가맹점이 5 개 미만인 경우 정확한 정보제공과 가맹점의 정보보호를 이유로 지역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매출액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당 가맹사업은 점포없이 영업하는 방문형 및 화상형 가맹점이 많으므로 면적 3.3 ㎡당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9 조제 2 항・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ITC 영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도	80	3년 11개월(1,424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ITC 영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지역본부의 현황은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정보공개일 바로 전사업연도의 당사의 연간 광고 및 판촉비로 사용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ITC 영어 가맹사업관련 광고 및 판촉비 내역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간	지출금액(단위:천원,VAT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판촉	(비공개)	99,631	(비공개)		(비공개)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9. 광고 및 판촉 활동' 을 참고하십시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명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개인상품부	중구 남대문로 2가 9-1번지	02-2073-5412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 체결함과 동시에 국민은행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하시어 작성한 예치신청서와 함께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시거나,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에 접속하여 가맹금을 예치하실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자세한 예치방법은 국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문의전화 (02-2073-5412)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ITC 영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최초 가맹금

1) 귀하(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역	금액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1. 가입비 2.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대가 3.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인력지원의 대가	11,000	가맹계약 완료 이후 반환 안됨, 단 계약 완료 이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개점 전 교육비	1,100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교육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나. 보증금

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역	금액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계약이행보증금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	1,000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	미납 채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다. 예치 가맹금의 범위

귀하 또는 가맹점 양수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가 입 비	11,000
교 육 비	1,100
보 증 금	1,000(VAT 해당없음)
합 계	13,100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하는 경우 상기 내역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라.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내용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49.5 ㎡ (15 평)	면적 3.3 ㎡당			학원, 교습소형 필요시 적용
총합계		20,900	1,393			15평 기준
원재료(교재)	당 사	550		오픈 1 주전	발주 전 계약해지	본사인테리어 매뉴얼 적용 의무 및 권장
인테리어 디자인	당 사	2,200		오픈 5 주전	발주 전 계약해지	
인테리어 (점포내장공사)	협력업체 (미정)	5,500	367	업체규정 적용	업체규정 적용	
간판&썬팅	협력업체 (미정)	3,300		업체규정 적용	업체규정 적용	
온라인부스	협력업체	3,850		업체규정 적용	업체규정 적용	
가구 및 집기류	협력업체 (미정)	5,500		업체규정 적용	업체규정 적용	

당사의 가맹 사업은 방문형, 화상형, 학원형, 공부방형이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학원형과 공부방형을 원하는 경우는 점포를 얻어 운영하므로 위 표의 금액에는 인테리어, 간판, 설비 등의 학원 및 공부방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산정되어 있으며, 방문형의 경우에는 학원 및 공부방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점포의 상황에 따라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어닝,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희망자	1)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3)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4) 점포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맹점사업자부담입니다.

바.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대졸이상	·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 만 20 세 이상일 것
강사 및 교사	대졸이상	· 영어회화능력 보유

사.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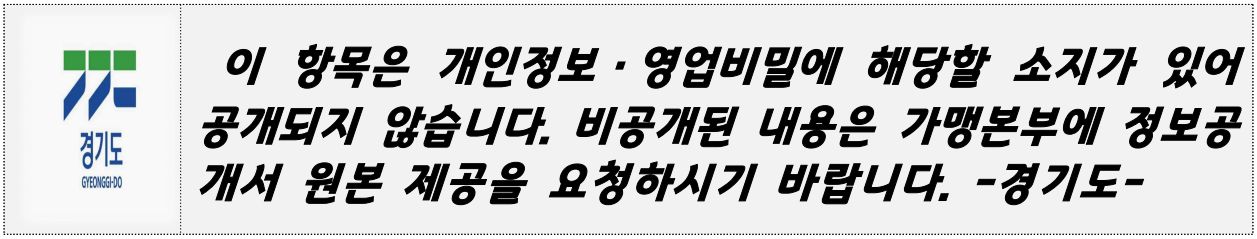

2. 영업 중의 부담

가.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지급 상대방	금액 또는 산정기준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로열티	당사	통역스쿨 (온라인 비수강시)	1 인 교육비: 30%	개별 청구	후불로 반환 안됨
		통역스쿨	1 인 교육비: 20%		
		통역대학	1 인 교육비: 20%		
		방학특강 외	1 인 교육비: 20%		
교육비	당사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또는 실비		개별 청구	교육실시 후 반환 안됨
광고 분담비	당사	정보공개서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 측 일부 분담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판촉 분담비	당사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력 업체 (미정)	가맹본부 분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협력 업체 (미정)	가맹본부 분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	당사	미지급액 X 연[20]%		지급기일 익일부터	후불로 반환 안됨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

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를 수취하지 않습니다.

구 분 (기준 : 2023년)	내 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사항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사항 없음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운영관리	당 가맹사업의 기준에 따른 운영 관리여부를 조사 실시	수시	
회계처리	가맹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수시	
기 타	가맹본부의 운영지침 등 준수여부 점검	수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귀하는 당사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비고
가맹본부가 ITC 영어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가맹본부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계약서 제35조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비고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본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가맹본부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계약서 제4조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비고
가맹본부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가맹본부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가맹본부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계약서 제31조

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ITC 영어]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양도 등에 따라 당사에게 초래된 행정적 실비 및 소정의 교육비, 기타 실행 경비는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에 나와 있습니다.

라.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1)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 종료 후의 조치	관련 계약조항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학원운영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사용 허가를 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기타 표시물을 즉시 철거 하여야 한다. 이때 철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2.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사용 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변형하여 가맹본부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가맹점사업자는 협력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기기 등을 임의 철거를 하지 못하며	제32조

지원 받은 품목을 반환해야 한다. 4. 이 경우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5. 가맹점사업자는 학원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를 반환 하거나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6.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원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의 개인사정, 또는 가맹계약 해지 시 학생들을 금전을 받고 양도할 수 없다. 가맹점사업자는 학생들이 ITC 영어에서 계속 수업 받을 수 있도록 가맹본부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학생들이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금전적인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2)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ITC 영어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경기도 GYEONGGI-DO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경기도 GYEONGGI-DO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ITC 영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ITC 영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ITC 영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상품・용역명	아이티씨교재, 아이티씨 PPT 자료, 온라인프로그램, 티칭용프로그램 등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 안내책자 제공)
제한내용 및 조건	상기에 기재된 상품・용역 이외의 상품・용역을 당사의 승인 없이 취급할 수 없음
위반시 책임	· 1회 위반 : 구두 경고 · 2회 위반 : 1회 서면 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또는 2회 서면 시정 요구 후 계약 해지
비고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준용

당사는 ITC 영어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ITC 영어 회원이 아닌 자	프로그램, 교육교재	프로그램 및 교재 유출 금지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 (단위:원/월)	가격 통보 방법	비고
ITC영어	240,000	수업 형태별로 홈페이지에 공지	온라인 6만원 오프라인 18만원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여부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영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서비스업	ITC 영어	해당없음

나.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초등학교 1 개당 1 개점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다. 영업지역을 재조정(변경)하는 경우의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따라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라.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ITC 영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당 사	www.itcenglish.com	영어 교육	방문교육 실시하지 않음

사.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가. 가맹계약기간

ITC 영어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다만, 갱신시에는 [1]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나.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갱신시 계약기간 [1]년**)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 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 갱신거절 사유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7조 2항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 면허 . 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라.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1) 사유 및 절차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항
가맹점사업자가 학원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제3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4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제4조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제15조
가맹점사업자가 개원 이 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제16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7조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18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20조
가맹점사업자가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제21조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21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제22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제23조
가맹점사업자 및 학원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26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시설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제27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27조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제28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제29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제30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제30조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35조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제25조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제25조

당사는 상기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발생 시 2 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 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의 즉시 해지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항
o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1조 4항
o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o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o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o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o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마.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 일에서 90 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 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 상의 양수가맹비, 계약이행보증금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행, 위탁 등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절차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업무위탁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업무위탁 절차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상속,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가. 경업금지의 범위

경업금지 되는 업종
당해 가맹사업과 동일한 교육내용으로 학원 또는 교습소, 공부방, 개인과외 및 이와 동일한 사업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자신 및 제 3 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ITC 영어와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 하여서는 안됩니다.

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영업시간	영업일수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시간 준수	연중무휴 (법정공휴일과 당사가 지정한 연2회 방학 제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제 9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제품의 표준화	담당자 매장 방문 → 매뉴얼 준수 및 사입 체크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완료	수시	
POS사용	담당자 매장 방문 → POS사용 상태점검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공동광고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50% /가맹점사업자수	광고 계획 공고→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결정 →가맹점부담액 통지(광고1개월 전)→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납입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50% /가맹점사업자수	
	가맹점모집광고	100%	-	-
공동판촉	통상적인 전체 행사	균등부담	균등부담	행사 계획 공고- 가맹점 부담액 제시-참여여부 결정- 행사에 따른 분담금 납입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판촉	관련 계약조항
개별 판촉활동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지점 개원 후 단독으로 시행하는 판촉활동으로서 가맹점사업자는 학원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자신의 노력으로 판촉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의 지도와 통제가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 판촉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30조 2항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지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거점지역 내에서 판촉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단,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리플렛, 카달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ITC 영어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30조 8항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비고
합계		**30~40 일**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1599-0205).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이전 부담 금전지급 방법 참조
1 차 상담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 계약서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14(7)일 이후 계약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	-가맹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1 부 교부 보관	1 일	
점포 계약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시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필요시	
도면 작성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필요시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필요시	
기자재 및 소품설치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필요시	
교육	- 가맹 교육 - 초도 교육, 점주교육	20 시간	
오픈	오픈 리허설(담당자 판단 후 오픈결정) 오프닝 행사(담당자 판단)	D-day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 일 후에서 7 일 후로 단축됩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분쟁의 해결	관련 계약조항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가맹본부의 임직원 포함)과 가맹점사업자 양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해결 노력을 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가맹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41조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및 시행령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점포환경개선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당사의 점포환경 개선 요구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관리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관리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 이론교육 : 창업자 교육, 회계 교육, 운영교육 - 실습교육 : 오프라인교육, 온라인교육, 공부방교육	집단강의 실습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 전까지	필수 교육
수시 교육	가맹점의 통지사항 및 의견수렴, 가맹점운영 사항 등	실습교육 집단 강의	교육실시 7일 전에 교육 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수 교육
분기교육	가맹점관리 및 운영 등	실습교육 개별 강의	교육실시 7일 전에 교육 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수 교육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내용	집단강의	교육실시 7 일 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선택 교육
재교육	개점 전 교육과 신입교육 재 필요시 실시	집단강의 개별교육	교육실시 7 일 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수 교육
입사교육	- 이론교육: 아이티씨 비젼 - 실습교육: 교습 방법	집단강의	**업무개시 전 20 시간**	필수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원/VAT포함)	비고
신규 교육	**20시간**	**1,100,000**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교육실시 7일 전에 교육시간 통지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또는 실비	
분기교육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또는 실비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또는 실비	선택 교육
재교육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또는 실비	
입사교육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또는 실비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와 강사 및 직원입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사 유	불이익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해지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갱신 거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업이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개시 승인 거부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1599-020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 지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별-1

2.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직영점 현황 별-2

3. 정 보 공 개 서 수 령 확 인 서 별-3

별지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경기도 GYEONGGI-DO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2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직영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 포함)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구분	점포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별지 #3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용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 정보공개서의 주요목차

Ⅰ.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Ⅵ.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ITC 영어]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　　(인)

가맹본부 :　　(인)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가맹본부용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 정보공개서의 주요목차

Ⅰ.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Ⅵ.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ITC 영어]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　　(인)

가맹본부 :　　(인)